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2호 중 “1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0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는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① (현행과 같음)
1.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 (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해당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가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u>10억원</u> 이상인 경우	1. ----- ----- ----- ----- ----- ----- ----- ----- ----- ----- ----- <u>30억원</u> ----- -----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	2. ----- -----

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가 ~ 나. (생략)

<신설>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 30억원 -----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목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따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

--

제55조의2(투자권유준칙)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